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(한일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-7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. .

발 의 자 : 한일용, 김영미, 김윤정,  
김효식, 문정애, 서종수,  
송병길, 이필레, 전승학,  
차재홍

## 1. 제안이유

3대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마포구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병역명문가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다.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라.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규정(안 제5조)

3. 관계법령 :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 제2조의2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17. 7.13. ~ 7. 17.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병역명문가"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.
2. "예우대상자"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)**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홍보)**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한다.

**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

[시행 2016.11.30] [병무청훈령 제1371호, 2016.11.30, 일부개정]

제2조의2(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)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.

1.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(전투·의무·해양경찰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) 복무를 마쳤거나,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
2. 국민방위군,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·25 전쟁에 참전한 사람
3.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'한국광복군'으로 활동한 사람

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·입영 기피,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